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[6574] / 보험팀장 백영기[6581] / 팀원 박수연[6587]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945호
시행일자 2020. 12. 24.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참 조
제 목 **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2020-311호(2020.12.24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·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개정내용 :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(5개), 항목 명칭 세분화

나. 시행일 : 2021.01.01.부터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